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의5서식] <개정 2026. 9. 11.>

기록물 부기 또는 정정 요청서

요청기관	기관명	소재지
	기관장 성명	담당부서명
	담당부서장명	담당부서장 전화번호
	담당자명	담당자 전화번호
요청사항	부기 또는 정정의 대상 기록물	
	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 및 내용	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요 청 기 관 명 직인

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귀하

첨부 서류	부기 또는 정정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